

등록번호	감사담당관-17371
등록일자	
결재일자	2023. 10. 30.
공개구분	부분공개(5)

주무관	기술감사팀장	감사담당관	부구청장
			10/30
현 조			

공원 및 녹지 분야 유지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



서대문구
감사담당관



목 차



I	감사실시 개요	-----	1
	□ 감사배경 및 목적	-----	1
	□ 추진내용	-----	2
	□ 감사중점 사항	-----	2
	□ 지적사항 총괄	-----	2
II	감사결과	-----	3
	□ 총평	-----	3
III	주요지적사항	-----	4
IV	지적사항에 대한 처분	-----	8
	□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	-----	8
	□ 처분요구사항 일람표	-----	9
V	행정사항	-----	10
[별첨]	1. 감사결과 처분요구서		
	2.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결과		
	3. 수범사례		

공원 및 녹지 분야 유지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

I 감사실시 개요

□ 감사배경 및 목적

- 우리 구 공원 및 녹지 분야에 대한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의 적법성, 보상평가 적정성,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등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 등을 시정 및 개선하여 사업성과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코자 함

□ 추진내용

- 감사대상 : 푸른도시과, 도시경관과(보상분야)
- 감사기간 : 2023. 8. 28. ~ 9. 8.(10일간)
- 감사범위 : 2021.1.1.부터 감사 종료일(2023.9.8.)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
- 감사대상 건수 : 297건
 - 각종 공원·산·놀이터·녹지대 등 조성 사업 : 166건
 - 미집행도시계획시설(공원) 사업 및 보상 : 7건
 - 실시설계 용역 등 : 124건
- 감사인원 : 총 4명 (기술감사팀장 외 3명)
- 감사장소 : 감사담당관 내 감사장
- 감사방법 : 서면·실지감사 병행

□ 감사중점 사항

-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공원) 사업 관련 토지 보상 및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
- 사업추진 방법 및 설계·입찰·계약 집행의 적정 여부
- 설계변경, 시공, 정산 적정 여부
- 사업준공 및 하자관리 적정 여부
- 기타 사업관련 업무처리 적정 여부

□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원, 명)

합계					시정(금액)			주의 (인원)	개선	기관 경고	통보	고발 (인원)
총건수	신분상 조치인원	재정상조치 (금액)	기관 경고	시정	소계	환수	기타					
12	2	3 (0,000,000)	5	2	5	3 (0,000,000)	2	2	-	5	-	-

※ 부서별 지적건수 : 푸른도시과(10건), 도시경관과(2건)

II 감사 결과

□ 총 평

- 2021년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행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, 공원, 녹지 등 조성 공사 및 용역 등 297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(사업비 30,013백만원, 보상비 18,931백만원)
 - 도시계획 입안·결정 및 사업시행인가보상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
 - 대부분의 사업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 이행되어 계획된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였으며,

- 녹지 및 공원의 꾸준한 확충과 생태환경의 기반조성으로 시민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

○ 일부 관련 규정·지침 숙지 미흡, 선례 답습적인 업무처리, 공사관련 업무 경험부족 등으로 아래와 같은 지적사례 발생됨

연번	수감부서	지 적 사 항	비고
1	푸른도시과	미집행도시계획시설(공원사업) 공유재산 지목변경 미실시	
2	푸른도시과	미집행도시계획시설(공원) 사업 토지조서 기입사항 누락	
3	도시경관과	미집행도시계획시설(공원) 보상사업 감정평가 신뢰성 훼손	
4	도시경관과	미집행도시계획시설(공원) 보상사업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 업무처리 부적정	
5	푸른도시과	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시행	
6	푸른도시과	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	
7	푸른도시과	주휴수당 정산 부적정	
8	푸른도시과	설계변경 신규비목 적용 부적정	
9	푸른도시과	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증 절차 미이행	
10	푸른도시과	건설일용근로자 적정 노무비 미지급	
11	푸른도시과	설계변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미이행	
12	푸른도시과	사무전결 규정 미준수	

-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서에서는 공사관련 법령·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감사사례 공유 및 변경된 관련 규정 숙지로 업무의 전문성·책임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,
- 부서장은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 및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됨

Ⅲ 주요 지적사항

□ 공유재산 지목변경 미실시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,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,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.

- 푸른도시과에서는 2019~2023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(공원) 사업을 준공 후 공원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 00개소에 대해,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·실시해야 하나 감사일 현재('23.9.6.기준)까지 지목변경을 실시하지 않음

□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토지조서 기입사항 누락

「토지보상법(약칭)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르면,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사업시행자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세부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.

- 푸른도시과에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(공원) 「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」 사업을 추진하면서, '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' 작성 시 「동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의 명세란에 '현실적인 이용상황'을 포함해야하나, 이를 누락한 채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' 고시문을 공고하였다.

□ 감정평가 신뢰성 훼손

「토지보상법」 제83조 ②,③항에 따르면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서의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.

- 도시경관과에서는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송부한 수용재결 보상(감정) 평가서의 비교사례(인근지역 평가사례) 대상지(○○동 ○○-○번지)가 존재하지

않는 지번임에도 이를 정정 혹은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결서를 인용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훼손함

□ 사유재산 취득 및 처분 업무처리 부적정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9조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제20조에 따르면, 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담당하는 부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·등록,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.

- 도시경관과에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(공원) 『○○○○○○○○○ 보상사업』으로 수용취득한 토지 00필지(○○동 ○○○-○)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등기·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.

□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시행

「전기공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 있다.

- 푸른도시과에서는 「○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공사」를 시행하면서 공사의 공종에 ‘전기제어공사’가 포함되어있음에도 이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통합발주하여 전기공사 품질저하 및 부실공사 우려를 발생시킴

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

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)」 제8조에 따르면 ‘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’고 되어있다.

- 푸른도시과에서는 「○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」 준공하면서,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 사용금액이 0,000원임에도, 계약금액인 0,000원으로 정산처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,000원 과다 지급됨

□ 주휴수당 정산 부적정

「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」 제20조의5에 따르면,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 공사의 계약상 대지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, 서울시 「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(Ver. 5.2)」에 따라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로 기성 및 노무비를 청구토록 되어 있다.

- 푸른도시과에서는 2023년 시행한 ‘○○○○○○○ ○○공사’ 준공하면서 건설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정산 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(one-pmis)에서 출력한 노무비 청구 명세서로 주휴수당(0,000원)을 정산하여야 함에도, 계약상대자가 임의작성하여 청구한 명세서(0,000원)로 정산하여, 주휴수당 0,000원 과다 지급됨

□ 설계변경 신규비목 적용 부적정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9장 제7절에 따르면,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.

- 푸른도시과에서는 『○○ 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 ○○공사』 관련하여 2021.12.6.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깎돌찰쌓기(H=1.0)를 신규비목으로 반영하였으나, 해당 공종은 표준품셈 돌쌓기 규격별 소요량을 참고하여 모르타르 수량을 0.009㎥ 반영해야 함에도, 0.09㎥ 적용하여 공사비 0,000천원이 과다 지급됨

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증 절차 미이행

「서울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고자 「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」을 운영하고 있다. 이에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대상인 모든 건설공사는 공사 준공 전 ‘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’에서 사용내역에 대한 기관별 검토 담당자(우리구 감사담당관)를 지정하여 검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.

- 푸른도시과에서는 ‘○○○○○○○ ○○공사’ 준공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‘서울시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’에서 우리구 감사담당관의 검증

절차를 이행해야 하나,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.

□ 건설일용근로자 적정 노무비 미지급

「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(2023.3.6.시행)」 제24조 ⑩항에 따르면,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(대한건설인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)을 보장해야 하고 계약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.

- 푸른도시과에서는 2023년 ‘○○○○○○○○공사’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지급되었음에도, 이를 시정요구하지 않아 건설일용근로자 00명에 대한 적정임금이 보장되지 않음

□ 설계변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미이행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사 규칙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, [표1]과 같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.

[표1]

구 분	공사, 용역, 물품 제조·구매	비고
설계변경 계약심사 (도급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중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20% 이상인 공사 ·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중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% 이상인 공사 	
설계변경 일상감사 (추정금액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계약금액 2억원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신규공종의 추가로 당해 계약 금액의 10% 이상 증가시(설계변경 방침서 또는 보고서 제출) ·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계약금액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※ 추정금액 : 도급비, 부가가치세, 관급자재비 금액을 합한 금액 ▶ 계약원가심사 대상이라는 사유로 일상감사를 제외해서는 아니 됨 	

- 푸른도시과에서는 ○○○○○○ ○○공사 외 00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심사 및 일상 감사를 득한 후 설계변경을 시행해야 함에도, 관련 절차를 득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

□ 사무전결 규정 미준수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」 제4조(전결방법)에 따르면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 또는 전결은 별표1에 의한다.

[별표1 공통사무]

단위 업무	세 부 사 무 명	기안 및 전결권자					구청장 결재	협조처
		담 당 자		과장	국장	부구 청장		
		6급 이하 업무분담자	팀장					
공사	3. 공사설계 변경(기본설계 이외의변경)							
	가. 도급비 200,000천원 이상 증감		기안				○	
	나. 도급비 100,000천원 이상 증감		기안			○		기획재정 국장
	다. 도급비 50,000천원 이상 증감	기안			○			기획재정 국장
	라. 도급비 50,000천원 미만 증감	기안		○				
	7. 도급공사의 기성부분의 준공검사							
	가. 200,000천원 이상	기안			○			
	나. 200,000천원 미만	기안		○				
	11. 도급공사의 중지 및 해제 결정과 착수, 기공 및 준공기간의 연기	기안			○			재무과장

- 푸른도시과에서는 「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외 00건」에 대해 설계변경, 준공검사, 준공기간 연기 등을 처리하면서 전결권자가 국장임에도 과장전결로 처리함

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

□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

- 개최일시 : 2023. 10. 12.(목), 14:00 ~ 15:30

- 심의위원 : 4명(감사담당관, 감사팀장, 기술감사팀장, 민원조사팀장)
- 심의내용 :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신분상 조치 양정 심의
- 심의결과 : 별첨

□ 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(단위 : 건, 천원, 명)

연번	부서	안 건 명	심의결과		
			처분종류 ¹⁾	재정상 조치금액	신분상 조치인원
총 12건 (시정, 주의, 기관경고)			· 시정(5) · 주의(2) · 기관경고(7)	0,000	2
1	푸른도시과	공유재산 지목변경 미실시	시정	-	-
2	푸른도시과	도시계획시설(공원) 사업 토지조서 기입사항 누락	기관경고	-	-
3	도시경관과	감정평가 신뢰성 훼손	기관경고	-	-
4	도시경관과	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 업무처리 부적정	시정	-	-
5	푸른도시과	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시행	주의	-	1
6	푸른도시과	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	시정	0,000	-
7	푸른도시과	주휴수당 정산 부적정	시정, 기관경고	0,000	-
8	푸른도시과	설계변경 신규비목 적용 부적정	시정, 기관경고	0,000	-
9	푸른도시과	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증 절차 미이행	기관경고	-	-
10	푸른도시과	건설일용근로자 적정 노무비 미지급	주의	-	1
11	푸른도시과	설계변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미이행	기관경고	-	-
12	푸른도시과	사무전결 규정 미준수	기관경고	-	-

1) 처분종류

- 시 정 : 감사결과 위법·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, 환수, 환급, 추급 또는 원상 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주 의 : 감사결과 위법·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교정 및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

- 훈 계 :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
- 기관경고 :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
- 권 고 :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V

행정사항

□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

- 조치방법 : 붙임 “감사결과 처분 요구서”의 건별 조치할 사항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
 - 시정·주의요구 : 2개월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
 - 개선·정비요구 : 2개월 이상 소요시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 우선 제출하고 추후 집행계획에 따라 최종결과 제출
- 조치결과 제출 기한 : 2023. 12. 29.(금)

- 붙임 : 1.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.
 2. 수범사례 1부.
 3. 처분심의회 심의결과 1부. 끝.